

참 고

일자리 창출 계획서 작성 예시

일자리 창출 계획서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법인은 본점 기준으로, 개인은 17귀속 주사업장 기준으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법인명(상호)	(주)창출		
대표자	이국세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00		
업 종	제조 / 소화기	전화번호	02-123-4567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017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50,000,000,000)원		중소기업여부	[여]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청년창업여부*	[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여부**	[부]

* 청년창업 : '13.1.1.이후 창업한(법인은 등기상 설립일, 개인은 개업일) 사업자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인 경우(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친화 강소기업

2. 2019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18년 상시 근로자 수(기준)	98.7 명	'18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2019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 명	'19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7.5 명	최소 1명 이상
④ 청년 근로자수	㉑ 2018년 35 명 ㉒ 2019년 37 명 ㉓ 증가(㉒-㉑) 2 명	'18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19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증가비율 $((\textcircled{3}+\textcircled{6})/\textcircled{1})\times 100$ 단, 청년창업기업과 청년친화강소 기업은 $(\textcircled{3}\times 2)/\textcircled{1}\times 100$	9.6 %	-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 수입금액 3백억 원~1천억 원 미만은 4%이상 이어야 함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상시근로자 수 계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사업연도	해당(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⑬ 합계	⑭ 개월 수	⑮ 상시 근로자수 (=⑬÷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1,184	12	98.7
2019년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1,274	12	106.2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19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일자리 창출 계획서(법인사업자용)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 종	/	전화번호	사업연도 ()월 결산법인
2017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원	중소기업여부	[]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청년창업여부*	[] 청년친화강소기업여부** []

* '13.1.1.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써 최대주주(출자자)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친화 강소기업

2. 2019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18년 상시 근로자 수(기준)	명	'18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2019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명	'19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명	최소 1명 이상
④ 청년 근로자수		
a) 2018년	명	'18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b) 2019년	명	'19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c) 증가(b-a)	명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증가비율 ((③+④)/①*100) 단, 청년창업기업과 청년친화강소 기업은 (③*2)/①*100	%	-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 수입금액 3백억 원~1천억 원 미만은 4%이상 이어야 함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상시근로자 수 계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사업연도	해당(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⑬ 합계	⑭ 개월 수	⑮ 상시 근로자수 (=⑬÷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2019년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19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일자리 창출 계획서(개인사업자용)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7귀속 기준 주사업장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 종	/	전화번호	
2017귀속 신고수입금액 (전체 사업장)	()원	중소기업여부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청년창업여부*	[] 청년친화강소기업여부** []

* '17귀속 기준 주사업장이 13.1.1이후 개업자로서 개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친화 강소기업

2. 2019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18년 상시 근로자 수(기준)		명	'18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2019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명	'19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명	최소 1명 이상
④ 청년 근로자수	㉠ 2018년	명	'18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 2019년	명	'19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증가(㉡-㉠)	명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증가비율 ((③+㉢)/①*100) 단, 청년창업기업과 청년친화강소 기업은 (③*2)/①*100		%	-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 수입금액 3백억 원~1천억 원 미만은 4%이상 이어야 함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상시근로자 수 계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사업연도 (귀속)	해당(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⑬ 합계	⑭ 개월 수	⑮상시 근로자수 (=⑬÷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2019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19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